

#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7. 4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시립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명예관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립미술관장을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함(조례안 제31조의2).

나.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명예관장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조례안 제31조의3).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안 제31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(신설)	<p><b>제31조의2(준용)</b>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간사,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립미술관”은 “이응노미술관”으로, “시립미술관장”은 “이응노미술관장”으로, “운영위원회”는 “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”로, “작품수집심의위원회”는 “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”로 본다.</p> <p><b>(신설)</b></p>	<p><b>제31조의2(준용)</b> ①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간사,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립미술관”은 “이응노미술관”으로, “시립미술관장”은 “이응노미술관장”으로, “운영위원회”는 “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”로, “작품수집심의위원회”는 “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”로 본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(신설)	<p>제 31 조 의 3 (명 예 관 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명예관장은 이용노미술관장이 이용노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</p> <p>③ 명예관장은 고 이용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 31 조 의 3 (명 예 관 장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